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34
----------	------

2014년 3월 4일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. 2. 19

나. 발 의 자 : 이창섭 의원(대표발의) 외 9명

다. 회부일자 : 2014. 2. 21

라. 상정일자 :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
2014년 3월 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

【제안설명자 : 이창섭 의원】

제안이유

-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법·법률고문이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자문의견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. 이에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

입법·법률고문의 답변기간을 신설하고 정원을 현행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입법·법률고문은 자문에 대한 답변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2조제5항).
-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20명 이내로 함(안 제3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수석전문위원 : 박 노 수)

가.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) 입법·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로 하여금 시의회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한편, 시의회 고문의 총 정원을 상향조정(10명→20명)함으로써 입법·법률고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임.

나. 입법·법률고문의 답변서 제출기간 신설(안 제2조제5항)

- 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제도는 1998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약 16년간 지속·운영되어 오고 있음.¹⁾ 현재 입법·법률고문이 시의회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최근 일부 고문의 경우 답변서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²⁾함에 따라 현재 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문의견 제출기한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이행력을 담보하고,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다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 상향조정(안 제3조)

- 입법·법률고문제도 도입당시 총 정원은 5명이었으나, 1999년에 10명으로 그 정원을 상향조정한 이래 약 15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음.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각

1) 현재, 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은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4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,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입법·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) 예를 들면, '13년 12월 기준으로 입법·법률자문을 의뢰한 총 20건 중 6건(약 30%)이 7일을 초과하여 제출함으로써 자문의견 제공의 적시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.

의회별 여건에 따라 최소 1명부터 최대 10명의 범위 내에서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동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.

[표-1] 각 광역자치단체별 입법·법률고문 정원 비교표

(단위 : 명)

자치단체명	정원	자치단체명	정원
부 산	2	강 원	2
대 구	1	충 북	2
인 천	10	충 남	5
광 주	5	전 북	4
대 전	5	전 남	3
울 산	3	경 북	5
세 종	3	경 남	4
경 기	10	제 주	3

- 그러나 최근 의정환경의 복잡화·전문화 등으로 인해 입법 및 법률 자문 요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연간 총 58건, 1인당 평균 17.4건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해 오고 있음.³⁾

3) 서울시의 경우 조례상 입법고문 15명, 법률고문 50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, 실제로 입법고문은 11명, 법률고문은 47명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. 연간 자문실적을 보면 입법고문은 1인당 2~3건, 법률고문은 10건 내외임.

[표-2] 최근 4년간 입법·법률고문 자문의뢰 및 수행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2010	2011	2012	2013	비고
자문의뢰건수	33	47	58	58	각 건당 3명에게 자문의뢰
1인당 평균 자문건수	9.9	14.1	17.4	17.4	

※ 기관쟁송 및 의회관련 소송 총 10건 중 3건도 입법·법률고문이 소송대리중
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행 입법·법률고문의 총 정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상향조정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,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법·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동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별개로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2배 수준까지 일시에 증원하는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- ⑤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1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직무) ① ~ ④ (생략) ⑤ <신설></p>	<p>제2조(직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</u></p>
<p>제3조(정원)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은 <u>10명</u> 이내로 한다.</p>	<p>제3조(정원) ----- <u>20명</u> -----.</p>